

1. 대출 부당취급 등을 통한 조합자금 횡령

2. 제제대상사실

「형법」 제355조, 제356조 및 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」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은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◆◆●●●은 2002.12.17.~2008.3.21. 기간 중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2억 97백만원을 횡령하였음

가. 2002.12.17.~2008.3.21. 기간 중 본인, 배우자, 형제 등 13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출관련서류 없이 전표만 기표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56건, 19억 37백만원을 취급·횡령하여 부동산 매입, 주식투자 또는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
[검사착수일(2008.3.24.) 현재 대출금 잔액 : 9억 26백만원]

나. 2004.10.28. ○○은행(◆◆◆◆동지점)에 예치되어 있던 조합의 여유자금 2억원을 부당 인출·횡령*

* ◆◆●●●은 횡령금을 ▼▼은행(★★★지점)의 본인 명의 ■■■■■증권 위탁계좌에 입금하여 사실투자상담업자인 ◇◇◇로 하여금 주가지수옵션자금 등으로 운용토록 일임하였으며, 조합 장부에는 위 2억원으로 조합이 유가증권(MMF)을 매입한 것처럼 회계처리

[검사착수일(2008.3.24.)현재 ■■■■■■증권계좌 잔액 : 2백만원]

다. ㉠㉠증권(㉠㉠지점)에서 조합의 위탁금(10억원, 2003.2.26. 입금)에 대한 이자로 2003.3.12.~2003.11.13. 기간 중 6차례에 걸쳐 ㉠㉠㉠㉠은행(㉠㉠지점) 조합계좌에 입금한 총 1억 15백만원을 2003.3.14. ~2003.11.17. 기간 중 부당 인출 · 횡령

라. 2004.3.15. ㉠㉠㉠㉠은행(㉠㉠지점)의 조합 예금계좌에서 6백만원을 부당 인출 · 횡령

마. 파산자 (바)사사사사사사사사가 2007.6.14. ㉠㉠㉠㉠은행(㉠㉠지점) 조합계좌에 입금한 파산채권(예금 12억원에 대한 미수이자 53백만원)에 대한 배당금 39백만원을 2007.6.21. 부당 인출 · 횡령*

* 07.2.12.~07.6.14. 기간 중 ㉠㉠㉠(자자자(의 부동산 동업자)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사용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 원	문책경고 : 4명
직 원	면직 : 1명, 정직 : 1명

< 관련법규 >

1. 「형법」 제355조, 제356조
2. 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」 제3조
3.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99조